

문민종착역, 최종부도 확인

들어가며

1997년 새해는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전국적 정치총파업과 함께 시작됐다.

2월 96년 12월 26일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은 학자·변호사·의료인·종교인·노점상·학생 등 사회각계의 지지와 동참을 끌어내며 국민적인 저항으로 확산되었다. 눈발 날리는 종묘공원에 수만 명이 운집하고, 을지로·명동 등 시내 곳곳을 거대한 함성으로 채우면서, 국민들은 87년 이후 10년 만에 '저항의 권리'를 확인했다. 동시에 지난해 8월 '연세대 사태' 등을 거치며 높려왔던 우리 사회의 '인권주장'도 '노동권 수호와 안기부법 개악 철회' 등의 구호와 함께 한껏 목청을 높여 나갔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총파업 중단과 더불어, 때맞춰 터져나온 한보사태 및 황장엽 망명, 그리고 김현철 씨의 국정농단 파문과 대선자금 공방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기성정치권은 보란 듯이 정국의 주도권을 재장악했다. 어느덧 머리끈 동여멘 노동자 대신 기름진 '용'들의 얼굴이 TV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었고, 대선을 향한 정치게임이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또한 공안당국은 5월 말 제5기 한총련 출범식 과정에서 발생한 이석, 이종권 씨 등의 사망사건을 빌미로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매카시선풍을 일으키며, '인권'의 주장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

한편, 총파업에서 대선정국으로까지 숨가쁘게 이어져온 정세의 이면에서는 가정과 학교, 노동현장 등 사회 곳곳에서 '강자'들의 폭력과 인권유린행위가 계속되어 왔다. 힘없는 여성들은 남편의 구타 앞에서, 철거민과 노동자들은 용역깡패의 폭력 속에서 속수무책이었고, 대학생과 시민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폭력은 그 위세를 점점 더해 갔다. 또한 5·18 시절을 연상케하는 학원사찰과 무차별 연행, 폭발적으로 증가한 국가보안법 구속과 서슬퍼런 검열의 칼날, 그리고 황장엽 망명과 한총련 사태를 통해 활개를 친 좌익합동수사본부의 활동 앞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한낱 공수표일 뿐이었으며, 오랜 민주화 투쟁을 통해 확보된 최소한의 '시민권' 조차 침식당하고 말았다.

더불어 문민정부 들어 꾸준히 제기되어온 '과거청산' 작업과 그를 통한 인권회복의 노력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두환 씨 등 5·18 학살의 주범들을 처벌함으로써 과거청산의 상징적 과제는 해결했지만, 5·6공 당시 각종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인권침해자의 처벌 및 반인권적 범죄의 개폐 등은 또다시 차기 정권의 과제로 넘어갈 운명이다.

오히려 5·6공 잔당과 대선주자들은 5·18 학살자들을 단죄한 대법원 판결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전·노 사면론을 제기하면서 산적한 과거청산의 과제를 묻어버리려 했다.

총파업을 계기로 되살아나는 듯하던 인권주장이 노련한 정치꾼들의 대선 게임에 밀려나고 광란의 공안선풍과 '강자의 폭력' 앞에 다시 힘을 잃어가고 있다. 심지어 과거로의 회귀 양상마저 보이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인권을 위한 투쟁은 더욱 힘겨울 전망이다. 하반기의 예상되는 탄압에 맞서 인권을 적극 보호해 내는 기본적 과제 뿐 아니라,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폭발적으로 등장하게 될 각계의 주장과 요구 속에 적극적으로 인권의 주장을 담아내는 것 역시 우리 앞에 놓여진 소중한 과제이다.

1. 파업권!- 저항의 권리로서의 자리매김

총파업! 한국노동운동사의 한획을 그은 이 사건을 97년 상반기 최대의 '인권선언'으로 평가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그것은 이번 총파업투쟁이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정당한 저항권의 하나로 당당하게 선언했다는 점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주도한 이번 총파업은 96년 12월 26일부터 실질적으로 파업이 중단된 97년 1월 18일까지 24일 간에 걸쳐, 연인원 3백59만7천11명(민주노총 집계)이 참가하고, 부문별로도 제조업(금속, 자동차, 현충련, 화학 등), 비제조업(건설, 대학, 사무, 전문 등), 공공부문(병원, 언론, 의료, 지하철, 화물 등) 등이 총망라된 한국전쟁 이후 최대·최초의 총파업이다.

총파업의 직접적 계기는 '12·26 노동법 날치기 개악'이었다. 날치기라는 절차적 반민주성도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주요 원인이었지만,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의 도입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3금조항(복수노조 금지, 교사·공무원 단결권 금지, 제3차개입 금지)의 유지와 대체근로, 노조전임자 무임금 조항 등의 신설로 노동자들의 결사·표현 등 사회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한 것은 총파업의 실질적 원인이었다. 날치기 개악은 이른바 '가진 자'들의 반인권적 횡포였으며, 노동자들을 위시한 국민들은 이러한 횡포에 대해 과감히 저항권을 행사했던 것이다.

파업이 한창이던 1월 13일 노동법과 형법을 전공하는 30명의 교수들은 "이번 파업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뿐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한 저항권의 행사"라고 천명하면서 '파업권의 복권'을 선언했다. 이들은 83년 ILO 전문가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항의파업의 수단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확인하면서, "비경제적 목적의 정치파업도 '저항권'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파업은 '미완의 저항'으로 끝이 났다. 이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된 노동법이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민주노총 스스로가 '국민편의론' 등에 부딪혀 파업을 유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파업권'은 권력의 '반인권적 횡포'에 맞서 노동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와 언론이 동원하는 국민편의론 또는 경제위기론 등의 이데올로기가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조차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파업권을 정당한 저항권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유포시키는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총파업투쟁이 노동자들에게 가져다 준 중요한 교훈이기도 했다.

한편 총파업을 통해 자본측이 느낀 위기의식은 3월 재개정된 노동법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새로운 노동법은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하며 △사업장 내의 파업행위를 제한하고 △무노동무임금을 법으로 못박았다. 심지어 △노동쟁의를 이의분쟁에 한정시킴으로써 이후의 정치총파업을 불법행위로 만들어 놓았다. 자본측이 정리해고와 복수노조를 양보하면서도 위 조항만은 빠뜨리지 않고 삽입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과 파업권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저항의 위력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저항의 행사조차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보여준 것이었다.

'권리'의 여지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됐던 1월 투쟁에서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잊혀져 가던 국민적 저항권의 의미와 존재를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는 의미만으로도 이번 총파업투쟁은 인권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인권선언'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2. 폭력, 폭력, 폭력

총파업투쟁의 인권선언과 함께 97년의 막은 올랐지만, 올 상반기에도 사회 곳곳에서는 권력과 돈, 힘있는 자들의 폭력이 끊이지 않았다. 약자(여성)에게 가해진 강자(남성)들의 학대는 살인이라는 참극까지 불러왔으며, 노동현장과 철거현장에서의 폭력은 조직적인 '테러'의 수준으로까지 치달았다. 또한 "짓밟을 것은 철저히 짓밟겠다"는 듯 경찰은 대학생과 서민 등 힘없는 자에 대한 폭력을 노골화했고, 이러한 경찰폭력은 특히 한총련 출범식 이후의 공안선풍을 타면서 더욱 기승을 부렸다.

1) 국가기구의 물리적 폭력

경찰에 의한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은 것은 이미 오래이다. <경찰폭력 일지 참조>
폭력의 대상은 크게 대학생과 일반시민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특히 경찰폭력에 희생된 시민들이 노점상, 일용직노동자 등 이른바 못 가진자들이라는 점은 음미해볼 부분이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경찰의 폭력행사는 지난해 8월 '연세대 사태' 이후 더욱 심각해졌으며, 이는 폭력시위(이른바 '화염병 시위')든 비폭력시위든 가리지 않았다. △시위진압전경들이 곤봉을 쌍절봉으로 개조해 사용하는가 하면 △방패와 곤봉을 사용한 직접 가격 △돌파화염병의 투척 △직격최루탄의 발사 등의 행위가 일상화되었고, 이에 따라 시위현장에서 실명 또는 두개골 함몰 등의 중상을 입는 대학생들도 속출했다. 심지어 시위학생을 조준사격해 총상을 입히는 등 경찰력의 행사는 살상을 불사하는 폭력 일변도로 치달았다.

3월엔 전남대생 류재을 씨가 시위도중 사망(사인 불명. 경찰결론은 심장마비사)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또한, 연세대 사태 이후 잦아진 전경의 대학구내 진입과 더불어,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불법연행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르는 현상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각종 집회 또는 공연을 앞두고 대학가 주변에서 벌어진 불심검문은 가장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인권침해 행위였다. 검문과정에서 경찰은 관련 법규정(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을 무시한 채 부당하게 가방 검색 등을 요구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항의하는 대학생을 협박과 폭력으로 제압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그러나, 불법연행이나 폭행을 당하고도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아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노력은 등한시됐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찰폭력의 확산을 방지시키는 행위였다.

동시에 심각한 경찰폭력 수준에 비춰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의 대응 역시 미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국내에서 경찰폭력에 제대로 대응하는 민간기구가 없다는 점도 한 가지 이유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찰폭력에 대한 각계의 인식부족과 관심소홀은 경찰폭력 근절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경찰폭력 주요일지>

1월 9일

총파업과 관련해 병원노조연맹 사무실 압수수색하던 남대문 경찰서 곽정태(수사과) 형사, 여성조합원을 성희롱하고, 취재중이던 노동자영상사업단 기자의 엉덩이와 불을 만지는 등 성추행

1월 15일

대전역 광장에서 시위에 참가했다가 귀가중이던 시민 김정화(54) 씨, 뒤쫓아온 전경 10여 명에게 무차별 곤봉세례와 발길질을 당해 머리가 찢어지고 목에 갑스를 요하는 중상

1월 16일

울지로 시위현장 활영중이던 노병권(30·인천영상집단 회원) 씨, 백콜단 5-6명에게 끌려가 폭행 당한 뒤, 촬영테이프 모두 뺏김

2월 1일

용인 신갈파출소에서 경찰과 실랑이 벌이던 노점상 민병일 씨 뇌사(13일 뒤 사망)
인천 산곡파출소에서 이종호(노점상) 씨 경찰에 폭행 당한 뒤 뇌사(11일 뒤 사망)

2월 25일

서대문경찰서 소속 정·사복 경찰 20여 명 경기대학교 난입, 귀가중 또는 건물내에 있던 학생 12명을 곤봉과 주먹 등으로 구타하며 연행, 조사 뒤 훈방.

3월 20일

조선대생 류재을 씨, 시위도중 사망

3월 24일

천안시 신안파출소 앞에서 시위중이던 단국대생 박상태 씨, 경찰의 조준사격에 의해 허벅지 관통상 입고 구속

4월 28일

전남대생 박민서 씨, 집회도중 직격최루탄 맞아 두개골 함몰
서울대생 남윤국 씨,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 시위 벌이던 중 경찰측에서 날라온 물체에 맞아 실명 우려

5월 16-20일

조선대 시위 과정서 대학생 1명 직격최루탄에 맞아 안면 함몰되는 등 대학생 6백여 명 경찰 측의 투석과 직격최루탄에 의해 부상

5월 19일

경주 경찰관, 달아나는 절도용의자를 총으로 쏴 사망
조선대 시위해산을 위해 실탄 3발 발사

5월 24일

한양대 여학생 불심검문에 항의하다 경찰 방패에 맞아 부상

6월 1일

한총련 시위 구경하던 시민 이철용(일용직 노동자) 씨, 전경들에게 집단폭행 당해 두개골 함몰

물, 목뼈 및 코뼈에 금이 가는 중상
6월 16일
영남대생 아무개 씨, 기숙사 뒤 계양수퍼마켓 부근에서 형사 7명에게 38구경 권총으로 위협당하며 강제 연행, 이 과정에서 경찰은 미란다원칙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아무개 씨는 무혐의로 석방

2) 노동현장에서의 폭력-용역깡패의 투입, 성추행 등

안산시 한국후꼬꾸 노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탄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회사엔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20여 명의 용역깡패가 경비원으로 상주하면서 노조원들의 집회나 출근투쟁 때마다 빈번하게 폭력을 행사해 왔다. 후꼬꾸 노조에 의해 안산경찰서에 고소·고발당한 자들의 숫자가 연인원 9백 명이 넘는다는 사실은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용역깡패들은 사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을 감시·협박함으로써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잡았으며, 이는 160여 명의 후꼬꾸 노조 조합원 가운데 70여 명이 퇴사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후꼬꾸의 사례는 철거지역에서 주로 등장해온 용역깡패들이 노동현장까지 투입돼 조직적으로 노조를 탄압한 경우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회사의 '돈'과 조직폭력배들의 '물리력'이 긴밀한 공생관계를 형성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후 노조탄압의 전형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올 상반기의 사건은 아니지만, 6월부터 급속히 문제화됐던 한국타이어(충남 신탄진 소재)의 노동운동탄압 사례도 우리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한국타이어에서는 지난 95년 이래 노조민주화운동을 벌이던 노동자들에게 지역내 조직폭력배를 통한 청부테러가 가해졌으며, 해고자의 부인이 지속적인 감시와 성추행을 당하고, 심지어 해고자를 들킨 여성노동자가 집단강간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한국후꼬꾸와 마찬가지로 '고용된 폭력배'에 의해 조직적 테러가 가해졌다는 사실은 '용역깡패'에 대한 사회적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여성노동자가 다수인 사업장에서의 성추행 및 폭행 사건이 빈발한 것도 특징적인 양상이다. 부천 사몽화장품, 동수원병원, 인천 아남정공, 울산 효성TNC 등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추행과 폭행에 대한 보고 사례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3) 지긋지긋한 철거폭력과 갈 곳 없는 세입자

철거폭력은 흔히 방화와 폭행, 성추행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심지어 지난해 2월 용인수지구의 신연숙 씨 사망 사건과 같이 극단적인 주민 희생까지 초래해 왔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도 철거지역에서의 폭력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못했다.

서울시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구에서는 4월 29일 '철거설명회'를 위해 지역을 방문한 서울지역철거민연합 간부들이 철거깡패들로부터 집중 테러를 당해 전치 4-6주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곳 주민들은 또 계속되는 철거깡패들의 마을 순시와 협박으로 인해 연일 공포 속에 지내야 했다. 단 6가구만이 남아 철거투쟁을 진행하던 용산구 산천동 지역도 방화, 폭행, 성추행, 감시 등 철거깡패의 폭력이 극성을 떨쳤던 곳이다.

이렇게 철거폭력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강제철거를 통해 이권을 확보하려는 재개발조합 및 건설회사측과 '최소한의 주거권'이라도 보장받고자 하는 주민층 간에 물러설 수 없는 충돌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철거지역 세입자들은 △일정기간(보통 3개월)의 생계보조비나 △공공임대주택(이른바 영세민아파트) 입주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입주권을 받고 이사를 간 세입자들도 해마다 상승하는 전·월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입주권을 되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게 되는 세입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입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인근의 가이주단지에 수용하는' 순환식 개발방식을 최소한의 주거대안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법규의 개정이 시급한 현실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 4월 30일 현재 서울시내의 재개발지구는 모두 96개 지역이며, 이 가운데 35개 지역에서 철거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둘러 철거지역 세입자들을 위한 근본적 주거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있을 재개발과정에서도 역시 철거폭력과 희생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4) 안에선 매맞고, 밖에선 성폭행 당하는 여성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주최로 '매맞아 죽은 여자들을 위한 위령제'가 열렸던 5월 21일. 그날 새벽 18년간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윤선화(37·서울 신림동) 씨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정폭력이 빚어낸 또 하나의 참극이었다.

윤 씨가 남편에게 군화발로 걷어채이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으며, 심지어 남편은 칼과 연탄집게 등 흉기를 사용하면서까지 윤 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을 살해할 당시 윤 씨는 일종의 정신분열증마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윤 씨의 아이들 역시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아이들은 현재 의사표현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월 4일 충남 아산에서는 송찬화(53) 씨가 사위 정 아무개 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송 씨는 자신과 딸에게 가해지는 폭행을 견디다 못해 살인을 저질렀으며, 이로인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이중의 고통을 겪었다.

지난해 이상희 할머니가 딸의 동거남을 살해한 사건 이후, 가정폭력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여성계를 비롯한 각계 사회단체들이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펼쳐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여야 3당이 마련한 가정폭력방지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내내 가정폭력방지법안은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방치됐으며, 결국 하반기로 그 처리가 미뤄지고 말았다.

한편, 5월 24일 대구에서는 한 여중생이 아파트 14층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조사결과 이 여중생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삼촌 우 아무개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대 구 모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뒤, 이를 폭로한 제자를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광주에서는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 "불량청소년 선도활동을 한다"며 10대 여성에 접근해 성폭행을 했다가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지성과 양식을 갖췄다는 대학교수와 사회지도층의 남성들, 자신을 보호해줄 것으로만 알았던 친족들까지도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현실에서 여성들은 성폭력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었다.

3. 전·노 사면론-“과거청산을 ‘청산’하자?”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씨 등 신군부 핵심세력들의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를 판결했다. 5·18 학살의 진상을 거의 밝혀내지 못하는 등 미흡한 판결이기는 했지만,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자는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전례를 세웠다는 것만으로도 그 역사적 의미는 커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역사적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키면서 산적한 ‘과거청산’의 과제를 덮어버리려는 반동적 움직임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5·6 공·전당과 대선주자들이 거론하고 나선 전·노 사면주장이었다.

이들은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한 것으로 과거에 대한 심판은 족하며, 이제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대화합의 시대를 열자”면서 앞다퉈 사면문제를 거론했다. 전·노 사면론이 TK표를 의식한 정략적 주장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통령선거 전이나 늦어도 김 대통령의 임기안에 사면문제를 해결지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노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과거청산문제는 일단락난 것이 아니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전·노 등 신군부 핵심세력의 집권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확인해 준 데 있었으며, 따라서 5·6공 치하에서 이들이 저지른 행위와 이에 저항하다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역사적 ‘청산’작업은 이로부터 시작이었던 것이다.

전·노의 사면이 거론되는 한편에선 9백여 명에 달하는 양심수가 감옥에 구금되어 있으며, 국가보안법 등 신군부에 의해 제·개정된 악법과 제도가 잔존하고 있다. 또 올해 들어 5·18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광주 망월동 묘역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정부는 5·18문제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지만, 여전히 5·18 당시의 실종자·암매장자 등 밝혀지지 않은 광주의 진실은 수두룩하다. 이밖에도 삼청교육대 희생자, 해직언론인, 해고노동자, 조작간첩 등 5·6공 치하 각종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 가해자 처벌의 문제 등 과거청산의 과제들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노 사면 주장은 과거청산의 종결을 의도하는 것이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면반대운동을 통해 이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상반기 내내 부진했던 과거청산의 움직임이 사면반대운동을 통해 재개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본격적으로 과거청산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4. 서슬퍼런 겸열과 힘겨운 표현의 자유

1) 통신겸열

불질문명의 발달과 정보통신시대의 도래는 컴퓨터통신이라는 새로운 의사소통 및 표현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의사소통의 공간에 대해서도 국가권력은 ‘겸열’과 ‘통제’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으며, 이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싸움은 계속되었다.

통신겸열은 이미 95년 한국통신노조 전용통신망 폐쇄와 96년 한총련 전용통신망 폐쇄, 계시물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선거법 적용 처벌 등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개인 및 단체의 ID를 삭제함으로써 통신수단 자체를 빼앗는 방식으로 통신겸열이 진행되었다. 한총련 출범식을 전후한 5, 6월 사이에 삭제 또는 사용중지된 ID는 전국연합, 전해투, 한총련 의장 ID 등 총 49개에 달하며, 삭제된 계시물도 2백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ID 및 계시물의 삭제는 불온통신을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근거로 정보통신부(정통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리나, 이 조항은 규제가능한 불온통신의 내용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불온여부의 판단을 정통부 장관의 해석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자의적 악용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인들을 비롯해 관련 사회단체들은 대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통신겸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월 11일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도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폐쇄시킬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의 개정안은 수사기관에 의한 전화도청, 통신겸열을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의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하는 내용이었다.

2) 영화겸열

지난해 10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뒤에도 겸열의 서슬은 살아있었다. 4월 제2회 서울다큐멘터리 영상제의 <레드 헌트> 상영취소, 5월 제1회 시민영화축제의 상영중단, 6월 인디포럼 영화제의 중단 사건 등은 모두 ‘겸열’의 칼에 휘둘린 결과였다.

다큐멘터리 영상제에서 본선 진출작이던 <레드 헌트>는 4·3제주항쟁을 소재로 했다는 이유로 상영이 취소됐으며, 천안문사태를 소재로 한 <태평천국의 문> 역시 상영을 취소당했다. 시민영화축제의 경우, 26편의 상영 예정작 가운데 4편만이 상영허가를 받았는데, 결국 공연신고 담당기관이었던 종로구청측의 압력으로 상영중단 사태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공연에서 문제삼은 작품 가운데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어머니의 보랏빛 수건> 등 기존영화제의 출품작 및 수상작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디포럼 영화제의 주최측도 당초부터 ‘사전심의’거부에 따른 불법상영을 전제로 하고 영화제를 진행했다. 그러나, 관할구청의 상영중지 명령에 따라 영화제를 중단했다가 7월 연세대 동문회관으로 장소를 옮긴 뒤에야 어렵게 영화제를 마칠 수 있었다.

또한,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영화진흥법 역시 겸열제도를 그대로 살려놓았다. 개정 영진법은 현재의 결정에 따라 공륜의 ‘제한·삭제·심의제도’를 ‘상영등급제도’로 바꾸긴 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대해 6개월간 등급부여를 유보하도록 했다. ‘등급의 영화관’이 없는 현실에서 등급의 판정을 받은 영화는 실질적으로 상영을 금지당하는 것이며, 결국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자진삭제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는 방법뿐이다. 이를 하반기 열리는 제2회 인권영화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전심의를 거부한 채 영화제를 진행할 방침인데, 이에 대한 당국의 대응도 주목할 부분이다.

3) 집회와 시위의 자유

5월 말 한총련 사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데서 출발했다. 당초 한총련이 평화적인 출범식을 치르겠다고 수차례 국민들에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한총련의 폭력성과 이적성이 문제”라며 한양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출범식을 원천봉쇄했고, 이것이 학생들의 폭력시위를 유발했던 것이다. 한총련 사태는 당국이 집회와 시위를 차

의적으로 금지 또는 허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며, 이는 신고제로 되어 있는 현행 집시법의 입법취지를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신고되지 않은 시위용품'을 문제삼아 집회나 행진을 봉쇄하는 것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1월 18일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 '노동법·안기부 법 개악 철회를 위한 집회'에서 경찰은 '근조 민주주의'라는 글귀가 새겨진 꽃상여를 문제삼아 행진을 봉쇄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여당은 현행 집시법에 △외부인의 대학 구내 집회를 금지하고 △시설 사용승락서가 있어야 집회를 허가하는 등의 독소 조항을 첨가한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87년 6월 항쟁 등을 거치며 힘겹게 얻어낸 현행 집시법마저 개악될 경우, 집회와 시위 자유의 영역은 현저히 후퇴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한편, 지난 1월 22일 서울고법 제4형사부(황인행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반인권적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적 판례라 하겠다.

재판부는 지난해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피고인 한석 씨 등 2명에 대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기간 동안 학생회 활동 금지 △정치적 목적을 떤 집회 참가의 금지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동안이라 하더라도 학생회 활동과 집회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및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결정이었다.

5. 국가보안법-현재진행형

5·6공 시절 숱한 양심수를 배출해냈던 국가보안법은 문민정부 4년간에도 꾸준히 위력을 발휘해왔다. 93년 105명, 94년 389명, 95년 285명, 96년 491명(민가협 통계)이었던 김영삼 정부 아래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숫자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의 잔재가 여전히 위력적임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97년 상반기 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된 7백여 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총 287명. 93년, 95년 한 해 동안의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은 물론, 문민정부 5년 사이 최고의 급증세를 나타냈다(표 참조). 이는 상반기 내내 끊이지 않은 조직사건과 5월 한총련 출범식을 전후해 벌어진 대량구속사태의 결과이다.

올 상반기 동안 발생한 조직사건은 크게 학생조직과 노동·청년조직으로 나뉘어진다.

3월 전주대 단기학생동맹(4명)

4월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8명) 노동정치연대(4명) 노진추 부산연락소(5명) 서울대 학생연대(13명)
전국학생정치연합(12명)

5월 노진추 울산지부(3명)

6월 노동정치연대 인천지부(4명) 한국노동청년연대(9명)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11명)

서울대 애국청년선봉대(5명) 부산지역 학생연대(10명)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23명)
전북대 자주혁신대오(16명) 등

이상과 같이 군소규모의 노동·사회단체와 학생단체가 대거 국보법 상의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처벌된 사회단체가 대부분 노동강좌나 지역운동 등의 공개적인 활동을 벌여온 단체였고, 학생조직 구속자의 대부분이 졸업후 직장생활을 하거나 군입대로 활동을 중단한 사람들이었던 점, 그리고 '구국선봉대 청년 사건'에서 보여지듯 강령과 규약

이 조작되거나 단체와 관계없는 사람이 구속된 사실 등은 공안당국이 무리하게 사건을 만들어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4월 24일 "사회 각계에 좌익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는 북한 전 노동당비서 황장엽 씨의 발언을 계기로 발족한 좌익사법합동수사본부는 "한총련 뿐만 아니라 전체 진보진영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좌익사법 색출작업을 벌이겠다"고 공포함으로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공안탄압을 예상케 하고 있다. 또한 시한폭탄으로 남겨진 '황장엽 파일'과 안기부법 날치기를 통해 권한을 강화한 안기부의 존재는 대규모 공안사건의 발생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97년 상반기 국가보안법 구속자(총 287명)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국보법	9명	20명	30명	61명	31명	136명

6. 사법부와 인권

1) 구속영장실질심사제 6개월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을 정착시킴으로써 커다란 인권신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던 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올 1월부터 시작되었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건수가 줄어들고, 법원의 영장기각율이 늘어나는 등 '인신구속의 신증'이라는 원칙은 점차 확립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수사상의 어려움을 제기해오던 검찰이 6월 말에 이르러 판사의 피의자 심문율을 줄이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원과 검찰의 마찰은 상반기 내내 지속되었다. 또한 변호인이 선임된 피의자의 영장기각율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의 영장기각률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남으로써 '무전 구속, 유전 불구속'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 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제의 보완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2) '상식'있는 판사들의 '이례적' 판결

여전히 보수적인 사법부 내에서 일부 판사들이 국가보안법 적용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매우 반가운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 '상식'있는 법관들의 '이례적' 판결일 뿐, 사법부의 대세로 판단되기엔 이론 시점이다.

▲ 컴퓨터통신 게시물로 인해 구속된 윤석진 씨 사건

윤 씨는 지난해 9월 강릉 잠수함 사건이 발생하자 컴퓨터통신 '천리안'을 통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서울형사지법 4단독 박찬 판사)는 "당시의 주요 언론들도 잠수함 침투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윤 씨는 단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 「레닌저작선」 이적표현을 아니다

박찬 판사는 윤석진 씨에게 적용된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윤 씨가 소지한 「레닌저작선」 「변증법적 유물론」 「사적유물론」 등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기소했으나, 박 판사는 "모두 이적표현물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서 제시한 서적에 대해 '이적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 공지사실 '국가기밀' 아니다

2월 20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인수)는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던 이광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가기밀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였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 씨의 국가기밀누설죄는 '순창농민회 활동' 사항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지식으로 한정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자의적인 법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 보안관찰처분 첫 제동

1월 21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보안관찰 처분 기간 개신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박석삼 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행정기관의 판단만으로 보안관찰처분이 개신되어오던 관행에 첫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판결이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복역자 등을 대상으로 출소후에도 거주지, 교우관계, 직업, 종교, 재산상황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으로, 현법상 양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악법으로 지적받고 있다.

7. 기타

1)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상반기에 논란을 빚은 주요 인권문제 가운데 하나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였다. 정부가 98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준비해온 전자주민카드제도는,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IC 카드로 대체하면서 의료보험내역, 운전면허, 국민연금, 인감 등 7개 항목 35개의 정보를 하나의 카드에 통합·수록하는 제도이다.

95년부터 준비를 본격화한 정부는 이미 제조장비와 발급장비의 도입계약까지 마쳐 놓은 상황이었으며, 올 임시국회를 통해 관련법규인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킴으로써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에 따른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전자감시에 대한 우려는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과 저항을 불러왔다.

정부가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국민 불편의 감소와 행정의 효율화였다. 반면, 하나의 카드로 집중된 정보는 '권력'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며, 집중된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민들이 입게 될 사생활 침해는 지존파 사건이나 이한영 사건 이상의 과피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일었다. 동시에 이러한 위험성을 지닌 전자주민카드제도를 국민의사수렴의 과정을

무시해가며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그 저의가 충분히 의심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전자주민카드제 도입 반대를 위한 전국공동대책위(공동대표 김진균 등)가 구성된 이래 올 4월 제주도지역을 시작으로 광주·전주·부산 등에서도 각계 단체들을 중심으로 공동대책위가 구성되었으며,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 및 집회가 잇따라 열리는 등 반대 움직임은 본격화되었다. 결국 7월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가 일단 보류됨으로써 정부의 제도추진일정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95년 이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정부가 쉽사리 포기할리는 만무하며, 정부는 하반기 정기국회 등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적극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오웰의 '1984년'이 1998년 한국 땅에서 실현될 가능성성이 높아지면서,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은 하반기에도 주요한 인권 투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2) 이권에 밀려난 외국인노동자 인권

90년대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이 외국인노동자 문제였다. 값싼 노동력을 도입한다는 정부정책에 국내에 들어오게 된 외국인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유린, 사회적 냉대 속에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이 생활해 왔고, 급기야 95년이래 매년 명동성당 농성 등을 통해 '인권 보장'을 소리높여 외쳐왔다. 국내 사회단체들 역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유린에 주목하면서, 지난해 정기국회에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을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도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로 인해 인권탄압국이란 비난에 직면해 왔고, 불법체류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전향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정부는 5월 경제장관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는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정부가 추진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외국인노동자가 국내노동자들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법·의료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누릴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재계는 '인건비 상승과 노사관계 불안' 등을 이유로 고용허가제 도입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으며, 논란 끝에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보한 상태이다.

결국 '이권'만도 못한 '인권'의 현주소를 드러내며,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3) 짚주린 북녘,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북한의 수많은 어린이가 짚어 죽고 있다."

2년전 대홍수를 겪은 북한의 사정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차마 그 정도까지일 줄 몰랐던 남녘의 동포들에게 이는 충격적인 보도였다. 하지만, 이 충격은 곧 동포애의 확인으로 이어졌다. 종교인들을 비롯해 재야·사회단체가 '북한동포돕기' 운동에 빌벗고 나섰으며, 노동자, 초등학생 등 너나할 것 없이 속속 동포돕기 운동에 동참했다.

다만, 정부와 보수언론, 보수적 지식인들만이 '북한동포돕기'에 침묵했는데, 심지어 이들은 동포돕기운동을 벌이는 민간단체를 내사하는 등, 운동의 순수한 취지마저 왜곡·방해하는

반인률적 작태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굶주린 북녘'은 '배고픔으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인권'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주었다. 먹고 입고 잠자는 문제의 해결없는 '인권'은 가진 자의 '여유'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어에 대신하여

폭력이 파치는 세상. 97년 상반기를 돌아보며 내린 우리 사회에 대한 결론이다.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은 그것이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이든, 양심을 짓누르는 폭력이든 가장 직접적인 인권유린 행위임에 분명하다. 문민정부의 출범에서 그나마 기대했던 것도 이러한 폭력과 탄압 만큼은 사라질 것이란 점이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임기가 종착역에 다다른 지금, 그러한 기대가 ‘환상’이었음을 우리는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오히려 그나마 확보했던 최소한의 시민권조차 유린당하고, 대선을 앞둔 하반기에도 살벌한 공안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눈과 귀가 ‘자유’와 ‘시민권’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폭력과 탄압 못지 않게, 사회적 차별과 억압 역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인권유린행위임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관심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태수 씨가 뇌물로 수십 억씩을 뿌리고 다닐 때, 재개발지역의 철거민들은 방 한칸 마련 못해 노상에 잠자리를 펴야했다. 경제적 손실과 외관상의 이유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장애인들을 쫓아냈으며, 서민들은 비싼 의료보험료를 내면서도 돈 '몇푼'이 없어 치료받기를 포기했다. '남녀평등'·'세계화'의 구호 속에서도 여성과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고 있으며 임시경쟁에서 탈락한 아이들이 갈 곳은 '불야성의 환락가'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제 곧 대통령후보들의 입에서 수만가지의 공약과 주장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다도 중소기업인들에게서 나오는 ‘표’가 더 중요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기업의 이윤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보다 더 중요한 그들에게서 ‘대단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또 한 번의 자기기만 행위일 것이다.

아직 미미한 역량과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권운동의 분발이 더 요구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인권하루소식

머리글
부록

합본 8호
(제797호 - 제914호)

- 제797호(97.1.7, 화) /39
1면 · 종로·명동서 2만여 개막반대 시위
· 1997년 무역이 달라졌다
23면 · 12월 충무차(770-7368)
· 수영대회
- 제798호(97.1.8, 수) /42
1면 · 동산의료원 손비충수 병비로 파업한 암
· 사회·시민단체, 대통령회견 일정히 규탄
2면 · 날치기 학회 양성수 단식농성, 안양교도소 폭발 경찰조치
· 주간판판호증(96년 12월29일-97년 1월7일)
- 제799호(97.1.9, 목) /44
1면 · 수원교도소 양성수 최후개연 단식농성
· 경찰 대낮 8차전 헬기, 토성지 고통마비
· 국제연편단체 성명, "경제발전 마련하에 노동자 회생 단체"
· 온라인 토큰회 "노동법, 안기부법, 기술물과의 충돌"
2면 · 김대중정부 행의 앞서 보내기, 3일동안 9백명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 끌어
· 새정원, 산재보상 민영화 추진, "타는 불에 기쁠듯"

- 제800호(97.1.10, 금) /46
1면 · 전세계 노동자여 단결투쟁, 10·10·10 항의방문단 일국
· 문재인 1백여 동호회 겸손리본집기, 충북법 서약서명 2천5백여 명
2면 · 광주목회연합으로 부상축출, 노동자·학생 도심 가두시위
· 한반·총회

1997. 8.

인권운동사랑방

- 제801호(97.1.11, 토) /48